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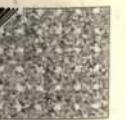


시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Korean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 110-736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11호
전화 02-3675-9935, 766-9935 전송 02-3675-9934 E-mail kdawu@hanmail.net www.kdawu.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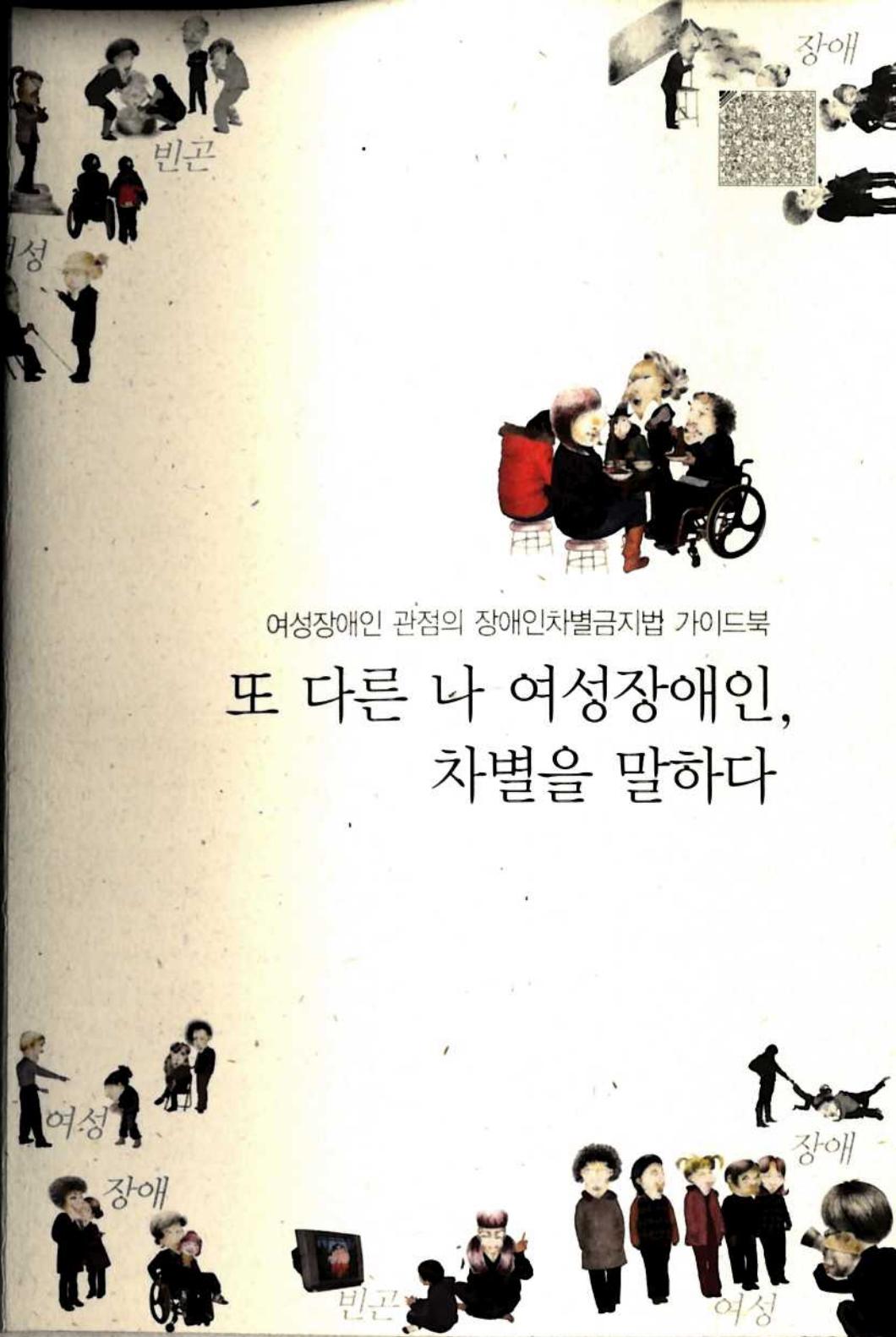
본 여성장애인 관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은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관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

또 다른 나 여성장애인, 차별을 말하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또 다른 나 여성장애인, 차별을 말하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장애·빈곤을 이유로
전 생애에 걸쳐 차별로 점철된 힘겨운 삶의 여정을 살아야 한다.
우리 사회 여성장애인은 '그 몸으로, 거기다 여자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며
차가운 냉대와 편견으로 인해 늘 주변화 되고 대상화 되어왔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변화의 주체로 당당히 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연대와 투쟁으로 함께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여된 민감한 감수성과 가슴 속 깊은 언어로
모든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인간답고 평등한 세상을 살도록 하는
메시지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안의 또 다른 힘,
내안의 또 다른 나,
여성장애인이 살아있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999년 4월 17일 창립대회를 갖고 설립된 전국최초의 여성장애인 연합 조직이며 인권운동단체로 우리 여성장애인들의 잊어버린 목소리와 모습을 찾아서 그리고 지역의 물뿌리 조직으로부터 시작되고 모아져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상호역량강화 및 교류협력을 통해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소중한 인권을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일구어 나가고자 현재 10개지부와 2개 회원단체 1개 지부준비위원회에서 4500여명의 여성장애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2008. 12.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제1장 총칙

·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미국(1990), 호주(1992), 영국(1995), 홍콩(1996),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 독일(2002)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3번째 시행 국가로 2007년 3월 6일 제정, 2007년 4월 10일 공포되었으며,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의 정의(제2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이를 장애인이라 한다.

미국 장애인법(ADA)에서의 정의

개인의 생활상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그러한 손상의 이력이나 기록, 그러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로 정의한다.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DDA)에서의 정의

실제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으로 정의한다.

· 차별의 4가지 유형

1.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사례]

- 장애를 이유로 학교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
- 장애를 이유로 대중음식점 및 헬프집 등의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2. 간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사례]

- 공무원 시험 시 시각장애인에게 1.5배의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 대필자가 필요한 뇌병변장애인에게 대필자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사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직장 등에서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4.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적용사례]

- 대중매체인 TV나 지면광고 등에서 불쌍하거나 작하게 표현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고정된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



· 차별예외 조항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별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4조 3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

→ 지체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시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 차별판단 지침)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4조 4항)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기타 법령에 의한 적극적 조치 등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의학적 검사의 금지 제10조, 제11조, 제12조

가. 해설

근로관계(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사용자가 드러낼 수 있는 장애인 차별 금지를 선언한 규정이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단계, 진입후의 단계 등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과 채용단계와 그 이후 단계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검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직무에 필요한 검사를 하더라도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장애경력과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나. 차별사례

청각 여성장애인 M씨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이유로 10년 이상 다닌 직장(의류회사, 미싱작업)에서 한 번의 승진도 하지 못했다.

지체 여성장애인 D씨 1년 이상 미용실에서 일했으나 '싫으면 그만둬라'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고 다른 동료들이 받는 상여금마저 받지 못했다.

지체 여성장애인 E씨 면접 시 '커피 심부름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채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지체 여성장애인 P씨 회식자리에서 다른 동료들로부터 장애 비하발언 듣기 일쑤였고 상사에게 고충을 토로하면 사표 쓸 것을 강요받았다.

고구마 촤 쇼핑 전화상담원 면접





제2절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3조, 제14조)

가. 해설

교육기관의 책임자는 장애인이 입학을 원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후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 학교 내 편의시설의 부족, 특수교사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입학과 전학을 거부하더라도 그 이유가 장애로 인한 것이므로 명백한 차별이 되는 것이다. 또 한 교육기관에서 하는 모든 교육과정과 활동에 장애인 및 관련자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제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 됨을 명시했으며 졸업을 앞둔 장애학생에게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게 하였으며 비하나 모욕의 경우 중대한 차별행위임을 명시했다.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은 서류와 양식만을 요구하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추가적인 행위를 할 때는 명백한 차별임을 밝히고 있다.

나. 차별사례

뇌병변 여성장애인 J씨 부모님이 '여자가 그 몸으로 배워서 뭐하니?' 라며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하였다.

지체 여성장애인 L씨 학교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서 점심은 물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지체 여성장애인 G씨 건축에 관심 있어 장애인 직업학교 필기시험을 보았는데 손이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되었다.

청각 여성장애인 U씨 수화를 하지 못하는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 너무 힘겨웠다.



- **고등학교 3학년 2반 -



여성장애인 관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
또 다른 나 여성장애인, 차별을 말하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5조, 제16조, 제17조)

가. 해설

재화와 용역은 일상생활에서 구매하고 제공받는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서도 안 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이유,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토지나 건물의 임대나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아니 될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상품(보험가입, 대출, 신용카드발급 등)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보험가입의 경우 가입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기도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나. 차별사례

청각 여성장애인 O씨 미용실에 갔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다며 그냥 다른 미용실로 가라고 했다.

지체 여성장애인 P씨 아침에 상점으로 물건을 사러갔는데 '첫 개시부터 재수 없게 장애인이 그것도 여자가 물건을 사러왔다'며 판매를 거부했다.

뇌병변 여성장애인 J씨 슈퍼로 샴푸 사러 갔더니 주인이 다가와 머리 감는 시



능을 하며 '샴푸? 머리 감는거? 물어보는 등 어린애처럼 대해 불쾌했다.

여성장애인 보호시설장 P씨 여성장애인 보호시설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거래하던 공인중개사로부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항의하여 더 이상 집을 더 알아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각 여성장애인 U씨 보험회사에 태아보험을 문의하자 '엄마가 장애인이라서 아기도 영향을 받을수 있다, 건강한 아기를 낳은 후에나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 시설물의 접근 · 이용의 차별금지 제18조

가. 해설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장애인이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다. 장애인은 어느 특정한 시간을 정해 제한하거나 장애인들만 따로 앉도록 구분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하며, 나아가 장애인뿐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보장구를 들이지 못하게 하거나 보조견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을 말한다.

나. 차별사례

지체 여성장애인 Y씨 치과에 갔는데 목발이 비위생적이라며 병원으로 들어오

는 것을 거부당했다.

시각 여성장애인 S씨 친구와 약속한 카페로 안내견과 함께 들어가려 하였으나 종업원이 거부하여 카페 밖에서 친구를 기다렸다.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19조

가. 해설

장애인의 도로(육교/지하보도 포함)를 이용해서 이동하거나 도시철도역사(전철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버스나 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이용을 거부당하는 것은 차별이다. 아울러 휠체어나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같은 보조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며 이로 인해 전동휠체어나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이 탑승하므로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불리한 요금을 적용하면 안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담당부서가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인 등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며 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 차별사례

지체 여성장애인 D씨 비오는 날 택시를 타니 '비도 오는데 그 몸으로 뭐 하리



여성장애인 관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
또 다른 나 여성장애인, 차별을 말하다

나왔나? 집에나 있지' 라며 휠체어 실어 준 대가를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청각 여성장애인 K씨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글로 써서 보여줬더니 지름길이 아닌 길로 돌아 요금이 많이 나왔다. 잘 아는 길임에도 제대로 항의할 수 없었다.

시각 여성장애인 A씨 버스 승차 시 시간이 지체되자 기사는 '앞도 안 보이는 데 그러다 사고 나면 어찌려고 하냐. 불쌍해서 기다려줬다'고 말했다.

·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 ·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개인정보보호, 정보접근 ·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의무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가. 해설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정보의 접근과 의사소통을 차별하거나, 보조견 및 보장구 등의 대상을 차별하는 것과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동행했거나 배치된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방송업자가 방영하는 방송물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의 접근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동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시에는 접근이 어려운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 소망한 집 -

여성장애인 권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
또 다른 나 여성장애인, 차별을 말하다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두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도구의 개발과 보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지켜야 할 장애유형에 맞는 제품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나. 차별사례

시작 여성장애인 A씨 버스에서 음성안내가 나오지 않아 기사에게 문의하니 '자기가 내릴 곳은 자기가 알아서 내려야 할 것 아니냐'며 화를 냈다.

청각 여성장애인 C씨 직원회의 시 수화통역사 배치를 요구하였으나 '청각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럴 수 없다'고 거부당했다.

청각 여성장애인 A씨 TV 요리프로그램에 관심은 많으나 화면해설 자막 혹은 수화통역이 아닌 짧은 자막으로 프로그램을 파악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크다.

지적 여성장애인 K씨 본인이 직접 휴대폰을 개설하지 않았으나 본인명의로 요금이 청구되고 있다.



· 문화 · 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24조, 제25조

가. 해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 · 예술 · 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설의 이용이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차별사례

지체 여성장애인 U씨 극장에 갔는데 휠체어장애인 지정좌석은 맨 끝에 있어 남자친구와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볼 수 없었다.

시각 여성장애인 K씨 공연을 보러 갔는데 좌석으로 된 안내책자가 없어 상세한 공연내용을 알 수 없었다.

청각 여성장애인 B씨 한국영화를 보고싶지만 자막 및 수화통역이 없어서 외국영화만 보게된다.

지체 여성장애인 L씨 휠체어를 타고 청소년 수련원 내 육상트랙에 들어서자 관리인이 쫓아 와 '이 곳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곳이니 장애인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말했다.



- 조Jin 극단 -



제4절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

-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6조, 제27조

가. 해설



- 쌍수동 요가교실 -

여성장애인 관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
또 다른 나 여성장애인, 차별을 말하다

장애인의 형사절차상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그 침해 결과는 돌이킬 수 없거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사법 및 행정절차에서의 차별은 차별의 주체가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아니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이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피해자 불문) 장애인은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구금 · 구속 되었을 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이 정당한 편의제공과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선거의 후보자 · 정당이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시 차별하지 아니할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선거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것이므로 점자형 선거공보, 방송광고 · 후보자 연설방송 시 수화 또는 자막 방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가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차별사례

청각 여성장애인 ㄚ씨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수화통역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으나 장애특성을 제대로 고려 받지 못해 조사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지적 여성장애인 D씨 조력자 등의 도움 없이 혼자 조사를 받은 후 절도범으로 몰렸다.

지체여성장애인 P씨 06년 지방선거 당시 휠체어를 타고 투표 하러 갔으나 투표소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에 있어 그냥 돌아왔다.

뇌병변장애인 A씨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에 신고, 언어장애로 인하여 조사 나온 경찰에게 피해정황 설명을 원활히 하지 못하자 ‘이런 식으로 장난 전화하면 안 된다’며 면박을 줬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에서의 차별금지

· 모·부성권에서의 차별금지 제28조

가. 해설

모·부성권이란 결혼 유무나 임신, 출산, 양육의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무능력하다거나 비정상이라는 등의 편견으로 인해 성년 이후에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부모가 될 기회가 타의에 의해 제한당하거나 박탈해선 안 되며, 장애인이라서 불임시술이나 중절시술을 권유하는 의료인, 가족 등 직·간접적으로 차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 됨을 말하고 있다. 나아가 부모가 되었을 시 자녀들이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구분되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입양에 대한 것으로 장애만을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면 차별임을 밝히고 있다.

나. 차별사례

지체 여성장애인 U씨 비장애인 남성과 교제 중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남자 집에서 결혼 반대가 심해 해어진 후 혼자 딸을 낳아 키우고 있다.

지체 여성장애인 Y씨 비장애인 남성과 교제 중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아이로 내 발목을 잡을 걱정이냐, 네 몸 하나 돌보지 못하면서 아이 낳아 어찌려고 하냐’며 남자친구로부터 중절수술을 강요받았다.



- 찬사랑 유치원 -

여성장애인 관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
또 다른 나 여성장애인, 차별을 말하다

지적 여성장애인 K씨 생활시설 내 연애를 시작하였으나 시설관리자에 의해 불임시술을 당했다. 이후 가족들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시설 눈치를 보며 모른 척 했다.

지체 여성장애인 E씨 아이를 낳아 키우던 중 둘째 아이를 입양하고자 관련기관에 문의하였으나 '장애인 부모는 아이를 입양할 조건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정각 여성장애인 J씨 충분히 자연분만이 가능함에도 산부인과에서는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이유로 제왕절개를 권했다.

시각 여성장애인 L씨 유치원으로부터 아이, 엄마 함께 체험학습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담당 교사에게 전화하여 장애를 설명하고 아이만 보내겠다고 하니 아이도 보내지 말라는 대답을 들었다.

· 성에서의 차별금지 제29조

가. 해설

장애인의 성에 대하여 편견과 부정적인 관행 등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정체성을 표현하고 성 향유를 위한 도구를 구입하고 활용하는 것과 이성교제와 결혼을 강제로 못하게 하는 등으로 성(sex, gender)적 권리를 제한·박탈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임신·출산·양육을 못한다거나,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중절 및 불임시술 등의 암묵적



인 관행, 장애인의 성을 왜곡하는 관습적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나. 차별사례

지체 여성장애인 O씨 생리를 시작한 후 모친에 의해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지체 여성장애인 R씨 가족으로부터 머리를 짧게 자를 것과 치마를 입지 말 것을 강요받아 한 번도 치마를 입거나 머리를 길러보지 못했다.

뇌병변 여성장애인 O씨 직장 남자 동료들로부터 '뇌성마비치고는 여자답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난 여잔데…'

지적 여성장애인 U씨 차위를 했다고 시설 관리자로부터 맞고 욕을 들었다.

지체 여성장애인 K씨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화장실을 자주 보았다.

제6절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건강권 등

·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0조

가. 해설

가족 · 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이 장애인에게 과중한 노동 등 역할을 강요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일련의 결정과정에서 배제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비하하거나 공개하는 경우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교육 받을 기회를 박탈하거나, 장애인의 수입관리나 상속 등의 재산권 행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 등 각종 권리를 행사로부터 배제해선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양육권, 친권의 지정에서 장애만을 이유로 배제하는 행위와 이러한 권리 등을 조건으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면접교섭권조차 박탈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에서 시설입소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경우와 가족 등의 면접권과 외부와의 소통을 제한하는 것으로 입소생활인을 억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나. 차별사례

지체 여성장애인 B씨 시설에 살며 강제로 시설장 사택 청소와 설거지 등의 집 안일을 했다.



지체 여성장애인 C씨 한 달에 한번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조건으로 아이가 다섯 살 때 합의이혼을 하였으나 시가 쪽에서 '아이는 엄마가 장애인인 것을 모른다'며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시각 여성장애인 L씨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가족들로부터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걸 사돈집에서는 모른다'며 결혼 예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다.

지체 여성장애인 J씨 어릴 때 시설에 입소했는데 시설 측에서는 가족과의 단절을 강요했고 시설종사자가 바뀔 때마다 적응하기 힘들었다. 교육 받기를 원하자 퇴소를 강요하여 결국 퇴소하였다.

뇌병변 여성장애인 O씨 외식, 결혼식, 여행 등 가족행사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다.

뇌병변 여성장애인 M씨 새언니로부터 '결혼하면 고생한다. 나이 들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면 좋은 시설에 들어가 사는게 가장 속 편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뇌병변 여성장애인인 P씨 어릴 때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며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으나 강제퇴소 시킨다는 협박에 참고 살아야 했다.

시각 여성장애인 J씨 손님이 오면 가족들이 무조건 '너는 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





· 건강권 제31조

가. 해설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을 진단 및 처방함에 있어서 인격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다르게 대우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연구에 있어서 성별, 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과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것과 보건·의료 시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성별 등의 고려를 명시하고 있다.

나. 차별사례

청각 여성장애인 G씨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수화통역사가 없어 주치의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약만 처방 받아 나왔다.

뇌병변 여성장애인 B씨 장애유형별 몸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권유받아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출기 직전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 회복이 고통 절차였다.

지체 여성장애인 K씨 임신초기에 산부인과에 내원하였는데 모든 의료진이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몸을 관찰하며 '이몸으로 어떻게 임신을 하였느냐'고 질문하여 기분이 상했다.

· 괴롭힘의 금지 제32조

가. 해설

장애인은 어떤 폭력으로부터 든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학교나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과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장애를 이용한 추행 강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나. 차별사례

지적 여성장애인 H씨 부친으로부터 '씹에 장애인이 있어 재수가 없다, 왜 밤새 죽지 않고 살아서 일어나느냐'며 매를 맞고 밥을 먹지 못하게 해 여러 번 가출했다.

뇌병변 여성장애인 L씨 장애가 경미하여 충분히 학교에 갈 수 있었으나 뇌병변 장애를 흉내 내는 등 동급생들에 의한 집단 따돌림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뇌병변 여성장애인 K씨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의 괴롭힘과 무시로 인해 담임교사와 상담하였더니 전학을 강요,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 하였다.

청각 여성장애인 U씨 어렵게 직장을 구했으나 직장동료 누구도 말을 걸지 않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여 생활하기 힘들었다.



여성장애인 권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
또 다른 나 여성장애인, 차별을 말하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3조, 제34조

가. 해설

여성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장애여성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금하며 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게 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과 교육기관을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고 여성으로써 요구되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도 등 이 고려되어야 함과 참여의 기회를 제한·배제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 차별사례

시각 여성장애인 C씨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에 들어가 두 명의 딸을 낳았으나 아들을 낳지 못해 결국 딸들과 함께 쫓겨났다.

지체 여성장애인 K씨 척추 측만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K씨는 출산 후 회사에 복직하였다. 간혹 친정어머니가 모유 수유를 위해 아이를 안고 회사로 찾아왔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별도의 수유실 설치를 부탁하였더니 사장은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했다.



·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35조, 제36조

가. 해설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약(UN,1993)에는 장애아동에 대해 또래집단과 동일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의 중요성을 명시한 내용이 있다. 장애아동도 또래들과 평등하게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대우받아야 할 동양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장애아동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환경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활동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본 조항에서 명시한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였다.

나. 차별사례

발달 장애 아동 A군 통합어린이집에 입학하고자 입학상담을 하였는데 비장애인 부모들의 반대로 입학을 거부당했다.

뇌병변 여성장애인 K양 학령기임에도 초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5세부터 7세들이 있는 장애아동 조기교육실에 입학 했다.

·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제37조

가. 해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항목을 특별히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장애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차별받고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정신적 장애인으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나. 차별사례

지적 여성장애인 L씨 먹을 것과 적은 금액의 돈으로 유인되어, 어렸을 때부터 수년간 동네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정신장애인 P씨 모르는 남자에게 납치된 이후 한 달 간 지하방에 감금, 성폭력과 폭행으로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폐쇄병동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신장애인 L씨 가족들이 '동네 창피하다, 길 잊어버려 누구 고생 시키려 하느냐'며 방문을 잠그거나 발을 끓여 집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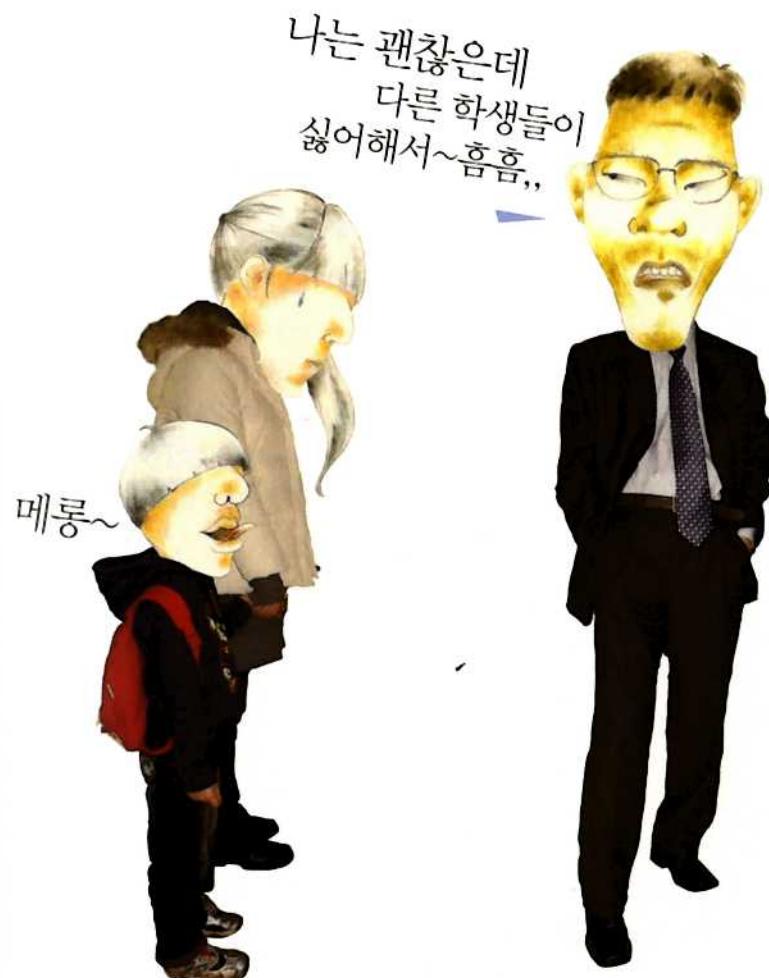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진정과 직권조사 (제38조, 제39조)

해설 진정은 장애인 인권 상담 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당한 차별에 따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과정의 첫 걸음이다. 진정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진정 서식을 작성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또는 주변인이 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소위원회 · 준용규정 · 권고의 통보 제40조, 제41조, 제42조

해설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소위원회를 두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차별 당사자가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 사안을 담당하는 행정 실무자를 통해 차별 조사를 실시한다. 차별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장애로 인한 차별 여부를 파악하고,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애차별 여부를 확정한다. 장애차별이 확정될 경우에는 차별을 가한 자 또는 기관에 시정권고를 한다.



- 멜론 초등학교 -



· 시정명령 · 시정명령의 확정 ·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43조, 제44조, 제45조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정권고 내용은 당연 법무부에 전달된다.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행정 실무자를 통해 사안에 관한 조사와 이율러 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을 확정할 수 있다.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 ①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 불이행
- ②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 불이행
- ③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 ④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의 내용은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 ① 차별행위의 중지
- ② 피해의 원상회복
- ③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④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임

시정명령은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법

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아래의 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시정명령'이라는 권리구제가 명시되게 된 주요 사례이다.

제5장 손해배상 · 입증책임 등

·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배분, 법원의 구제조치 제46조, 제47조, 제48조

해설 장애로 인한 차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피해자가 차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차별로 인해 가해자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다. 입증책임 배분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



제6장 벌칙

- 차별행위, 과태료 제49조, 제5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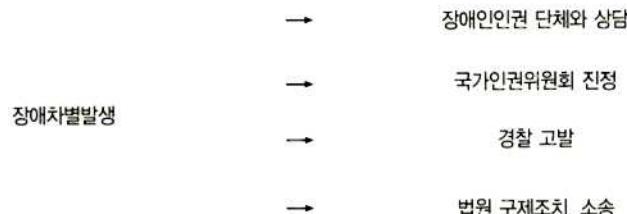
해설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 행위를 악의적으로 행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악의적인 차별이라 함은

- ① 차별의 고의성
- ②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 ③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 ④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여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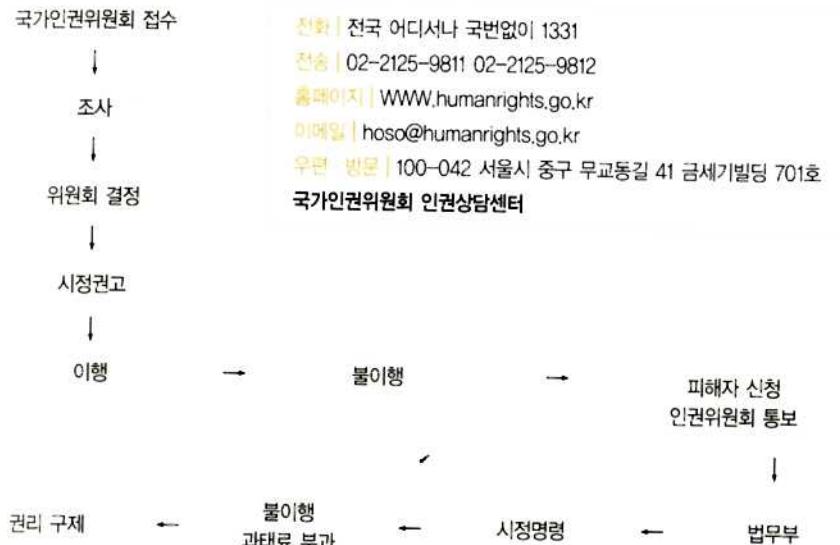
또한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 가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한다.

〈장애인차별 발생의 초기 과정〉



여성장애인 관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
또 다른 나 여성장애인, 차별을 말하다

장애인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 절차





진정서 양식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7호

접수번호

날짜 200 년 월 일 시

진정서

1. 진정인(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③ 모르고 있다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읽기 □ 알기

② 번역·허번재파수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음악 □ 텐션

이다며 어제 늦구이

□ 문제 () □ 기

여성장애인 관찰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 또 다른 나 여성장애인, 차별을 말하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297mm(보존용지(2종) 70g/m²)

200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과 장애인**

-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돋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돋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



- 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 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 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 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 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 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 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 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 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 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 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 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 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 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 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차별행위

-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돋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돋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차별판단

-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 **차별금지**

-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 ①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

여성장애인 관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
또 다른 나 여성장애인, 차별을 말하다

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접역, 접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



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화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개인정보보호

-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

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3.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5.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참정권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 ①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



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 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 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

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 **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준용규정

- ①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 **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시정명령

-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①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 손해배상

-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 차별행위

-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과태료

-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341호, 2007.4.10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소위원회의 설립준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 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 제8974호, 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

〈44〉부터 〈70〉까지 생략

14조 생략



여성장애인 관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

또 다른 나 여성장애인, 차별을 말하다

발행일 2008. 12

발행인 장명숙 · 이영미 · 권순기

삽화 김상윤

제작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지원 행정안전부

편집디자인 · 제작 디자인공간파인 02-2263-3006

※ 본 가이드북의 저작권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 있으며,

자료를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www.kdawu.org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11호(110-736)

Tel. 02)3675-9935 Fax. 02)3675-9934

본 여성장애인 관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은

● 행정안전부 민관단체 참여활동 지원 사업으로 발간되었습니다.